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치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지역구 지향적 입법활동이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박 지 원

정 치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지역구 지향적 입법활동이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차 재 권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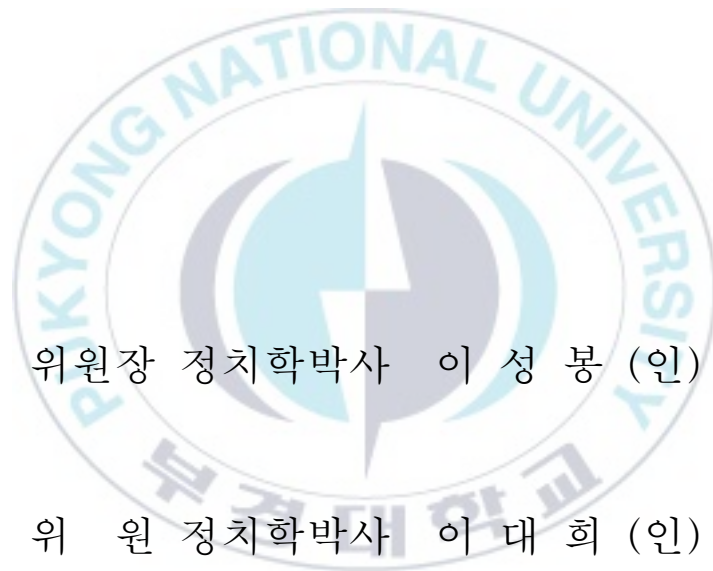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박 지 원

박지원의 정치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27일



위원장 정치학박사 이 성 봉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대 희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차 재 권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5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7
1. 현직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7
2. 현직의원의 입법활동과 재당선	19
3. 현직효과로서 의원 입법활동과 ‘지역구 지향적 입법활동’	26
III.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31
1. 데이터 수집방법	31
2. 변수의 조작화	32
3. 연구가설의 설정	41
4. 실증분석모형 구축	42
IV. 실증분석 결과	44
1. 기술 통계량	44
2. 기초 데이터 분석결과	46
3. T-test 분석결과	48
4.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50
V. 결론 및 시사점	57
참고 문헌	61
Abstract	66

표 목 차

<표 1> 재당선 영향 요인에 관한 주요 실증분석	17
<표 2> 의원 입법활동 관련 변수 정리	25
<표 3> 변수의 조작화	32
<표 4>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 변수 조작화	37
<표 5> 기술통계량	45
<표 6> 21대 총선 현직 지역구원의 재출마여부	47
<표 7> 21대 총선 현직 지역구원의 당락	47
<표 8> T-test 결과	49
<표 9>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결과	51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선거정치 및 선거연구 분야에서 가장 연구 관심을 끄는 주제 중 하나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 혹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당선 결정요인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현직효과’(incumbency advantage) 또한 해당하는 연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일반적으로 현직효과란,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였을 때,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Fiorina, 1977).

의회 및 선거연구에서 의원의 현직 보유 여부와 그러한 우위적인 위치가 다음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서는, 1970년대 초반 미국 의회연구에서부터 본격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한정택, 2007).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미국 하원 현직의원들의 재당선율이 80~90%에 육박하면서 현직효과는 더욱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문용직, 1997).

위와 같이, 초기 미국 의회연구에서 시작된 ‘현직효과’에 관한 연구 성과는 현재 한국의 선거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현직효과에 대한 초기 연구 관심은 현직효과의 존재 유무에 대한 평가로 집중되었지만, 근래에는 현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 관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도중·김형준, 2000; 윤종빈 2002, 2007, 2010; 한정택, 2007; 김상은·엄기홍, 2013; 박윤희, 2015; 황아란, 2017).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크게 후보자 요인, 정당요인, 선거구 요인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 분석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후보자 요인 중심의 투표행태에서 파생되는 현직 효과에 관한 연구 관심들도 강조되면서, 해당하는 연구들 또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한정택, 2007), 여기서 후보자 요인이란 후보자의 개인의 성격, 경력, 능력, 도덕성 등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 후보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상은·엄기홍, 2013).

위와 같이 국내 연구에서는, 후보자의 현직 보유 여부가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현직효과를 가지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에 관해 분석하는 연구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학계에 제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또한 현직효과를 가지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련한 다양한 연구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인데,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현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입법 활동이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 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하는 입법기관이자, 정책 과정의 의제설정자로서 입법기능(legislation)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보다 민주적인 정책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국회의 입법 기능은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궁극적으로, 의원 입법이 중요한 이유는 의원입법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제안되어 지는 것으로, 국민의 정책적 수요가 국가운영에 반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원 입법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인 중요성에 비해서, 의원의 입법 활동과 재당선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와 관련한 다른 연구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다.

위와 같이 의원입법이 가지는 입법기능의 규범적인 중요성 이외에도, 입법 활동의 중요성은 그것의 절대적인 양적 증가로도 증명되고 있다. 의원의 입법발의 건수는 민주화 이후 13대 462 건, 14대 252건, 15대 806건, 16대 1,651건, 17대 5,728건, 18대 11,191건, 19대 15,444건, 20대 21,594건으로, 15대 국회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7대 국회 부터는 이전에 비해 의원발의 법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윤희, 2015).

전진영(2013)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원발의안의 급증 배경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 ‘입법체제의 다양화와 입법수요의 증가’, ‘국회의원의 입법역량 강화’ 라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16대 국회부터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법안발의 건수 등 양적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의원 발의안이 급증한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정당 공천과정에서 의원의 정책입안능력이 중요평가 기준이 되면서 의원 입법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하는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단체에서 법안발의 건수 등의 양적지표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법안 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현직의원의 후보자 요인으로서 입법활동을 분석할 때에 단순히 현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양적 수치에만 집중하는 것은, 현직의원의 입법 활동을 적실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현직효과를 발생시키는 후보자 요인으로서 입법활동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서 입법 활동과 재당선 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두 번째, 현직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사용된 단순한 양적지표들은 현직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제기한 두 가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라는 후보자 요인의 학술적 연구 가능성과 중요성을 파악하고, 보다 엄정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현직의원의 입법활동’이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본문에서도 논의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직효과 및 의원의 재당선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직의원의 입법활동을 보다 정확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엄밀한 지표를 제시하고, 그렇게 제시된 입법활동 변수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관련 변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요인으로서 ‘입법활동’이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현직효과 및 재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요인인 ‘입법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입법활동’ 관련 변수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보다 적실성 있는 대리변수를 종합하여, ‘현직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한 통합적인 연구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들의 달성을 통해, 기존 선행연구 및 관련한 해당 논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보다 합리적인 실증분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앞서 밝힌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제 20대 국회로 제한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를 제 20대 국회로 한정된 까닭은, 제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현직의원의 입법발의 건수가 무려 21,594건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활발한 ‘의원 입법활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원 입법발의의 양적 증가는 그만큼 우리나라 국회가 제도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14대 국회 때 의원 입법발의가 252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0대 국회의 21,594건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현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요인인 ‘입법활동’이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동일한 선거구로 재출마한 20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한정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입법활동과 관련한 독립변수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으로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사용했고 연구모형의 실증적인 종합분석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통계자료의 양적분석을 위한 통계 분석 패키지로는 spss 25.0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현직효과’와 관련한 포괄적인 이론적 논의를 먼저 제시하고 이후 ‘의원의 입법활동’과 재당선에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의 측정변수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직의원의 입법활동’에 관한 더욱 적실성 있는 대리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3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결과로 설정된 연구 가설 및 측정변수 그리고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4장에서

는 그에 대한 결과로 기초적인 기술통계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본 장에서는, 우선 ‘현직효과’와 관련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과 이론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입법활동’과 의원의 재당선에 관련한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해당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입법활동 관련 변수들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이후, ‘현직효과로서 의원의 입법활동’이 가질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의미를 재도출하고, 결론적으로는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라는 새로운 대리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현직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현직효과’ 혹은 ‘현직의 이점’(incumbency advantage)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1970년대 미국의회 연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Erikson, 1972; Mayhew, 1974; Fenno 1973, 1978). 메이휴(David Mayhew)가 1974년 집필한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와 1978년 페노(Richard Fenno)의 *Home Style: House Members in Their Districts* 라는 저작 이래에 더욱 본격적으로 현직의원들의 정치활동 행태와 현직의원이 가지는 프리미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Fiorina, 1977; Jacobson, 1987; Cain et al, 1987; King, 1991; Norton and wood, 1993).

특히, 앤서니 다운즈(Anthony Downs)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 메이휴의 개인주의적 접근은 이후 합리적 선택론, 제도주의, 수학적 모델들과 결합하면서 현재까지도 미국 의회 연구를 지배하고 있다(백창재,

2017). 메이휴가 의원들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목표는 ‘재당선’(reelection)이라고 상정하며, 의원들을 ‘재선을 열망하는 존재(singe-minded seekers of reelection)’라고 정의한 것은 이후 해당 연구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만든 가장 중요한 전제였다. 다만, 메이휴의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메이휴는 의원이 ‘재당선’ 이외에도 다른 목표도 함께 추구하고 있으며, ‘재당선’이라는 목표가 다른 목표와 양립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 활동의 주요 동인으로 선거를 통한 보상을 전제하는 것이 그 자체로 보편성 있고 의원과 의회의 행태에 대해 일반론적인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재당선’이라는 단일 목적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임을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Mayhew, 1974).

메이휴는 ‘의원들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재선이라는 단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위와 같은 전제를 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행태가 선거와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했다. 특히, 메이휴는 현직의원들이 차후 선거에서 신인후보에 비해 크게 3가지 이유로 현직의 이점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구 재확정 시 현직의원들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밀집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둘째, ‘홍보’(advertising), ‘업적과시’(credit-taking), ‘정책입장표명’(position-taking)과 같은 행위로 신인후보에 비해 더 많은 투표 지지를 이끌어낸다. 셋째, 미국 정치에서 정당일체감의 약화로 인해 현직의원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활동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은 이유 중에서도, 현직의원들이 재선을 위한 활동으로 ‘홍보’, ‘업적과시’, ‘정책입장표명’과 같은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직의 이점’ 혹은 ‘현직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홍보’이다. 메이휴는 ‘홍보’ 행위를 ‘호감 가는 이미지를 창출하여 자신의 이름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직의원들이 자신의 활동과 업적을 홍보하고, 브랜드화 시켜 자신의 선거에 보편적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업적과시’이다. 업적과시란 현직의원이 자신의 노력으로 정치행위자들(주로 지역유권자)이 원하는 행위가 중앙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이에 대한 의원 자신의 업적을 주장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입장표명’은 정치 행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유권자를 기쁘게 하는 ‘입장을 취하고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메이휴는 보통 현직의원들은 유권자의 광범위한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의견이 분분한 경우에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Mayhew, 2004).

위와 같이 메이휴는 현직의원이 선거에서 크게 어떠한 현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또 그에 따른 의원들의 전형적인 의정행태를 분류하여 설명함으로써, 이후에 ‘현직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과 단초를 제공해주었다. 이뿐 아니라, ‘미국사회에서 정당일체감의 약화로 인해 현직의원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활동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메이휴의 주장 또한 차후 정당일체감 약화 및 당파심 해체에 주목한 다양한 미국 의회연구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케인(Bruce Cain)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케인은 당파심 해체에 주목하며 유권자들의 투표행태가 정당중심에서 후보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더해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역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돕는 현직의원의 지속적인 활동이 인지도 상승과 투표지지로 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Cain et al, 1987).

이상 본 연구에서는 메이휴가 분석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행태를 통해 ‘현직효과’ 가지고 있는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직효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현직의원의 의정활동 행태를 분류하고 분석했던 리차드 페노의 연구 또한 당연히 주지할 필요가 있다.

리차드 페노(Fenno, 1978)는 미국의회에서 현직의원의 지역구 활동이나 의정활동 행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페노가 현직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행태를 ‘홈스타일’(Home Style) 이라고 지칭하면서 현직의원에 대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노는 현직의원의 홈스타일이 가지는 기본적인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현직의원의 행태를 제시했다. 첫째, 현직의원 개인자원과 사무실의 자원을 자신의 지역구에 신경 써서 배분하는 것(Allocation of Resources). 둘째, 자신의 지역구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아를 제시하는 것(Presentation of Self).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에서의 활동을 자신의 지역구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Explanation of Washington Activity)이다. 이처럼, 페노는 현직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에게 개인적 지지를 얻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노의 경우 메이휴와는 다르게 현직의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꼭 ‘재당선’만은 아니라고 전제했지만(Fenno, 1973), 현직의원들의 활동유형을 분류하고 ‘홈스타일’과 같은 의원의 활동유형을 통해

현직의원들이 어떻게 지역구민들로부터 개인적 지지를 확보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의원들이 현직인 것을 활용하는 행태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의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홈스타일’에 관련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와 크레이그 굿맨(Craig Goodman)의 연구에서는 현직의원이 특히 ‘무료송달’(Franking), ‘의원사무실 지출’(office expenditures), ‘지역구 방문’(travel back home to the district)과 같은 대표활동을 통해 유권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결국 다시 현직의원의 ‘홈스타일’ 활동을 부추기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개인을 지지하는 투표’를 추구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Parker and Goodman, 2009).

메이휴와 페도가 제시한 현직의원의 의정활동 행태에 관한 주목과 분석은 현재까지도 현직효과에 관한 다양한 검증연구들이 진행 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현직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로, 윌리엄 베리(William Berry)는 1970년도부터 1989년까지 42,000명이 넘는 주 의회 의원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직의원의 입법 전문성이 의원의 재선을 제도화시키는 경향성에 대한 연구를 제시했다(Berry et al, 2000). 이외에도 현직우위 추정치가 전략적 퇴직(Retire Strategically)을 고려하지 않아서 과대평가되었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 전략적 퇴직이 실제로 중요하지 않고 현직효과는 과대평가 된 것이 아니라는 연구(Ansolabehere and Snyder, 2004), 주 정부 수준에서 현직의원의 정책 대응력이 재선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하는 연구(Hogan, 2008) 등 현직효과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현직효과를 검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는 ‘현직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현직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 제이콥슨(Jacobson, 2015)은 미국의원들이 누리고 있던 현직효과가 정당 충성도의 증가, 일괄투표(straight-ticket voting), 당파분열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스토키머(Stockemer)와 프레이노(Praino)는 현직의 이점이 1965년 이후 증가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성장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선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현직효과가 1990년대에는 1960년대 경험했던 현직효과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서야 1970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롤러코스터 관계’(A Roller-Coaster Relationship)라고 표현하기도 했다(Stokemer and Praino,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흐름에 맞추어 현직효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검증을 시도하는 연구 또한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TV방송 출연과 관련한 의원의 현직효과에 관한 연구(Ansolabehere et al, 2011), 선거 캠페인과 현직효과가 작용하는 연관성에 대한 연구(Drukman et al, 2020)등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정당과 후보자 중에 유권자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지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현직효과를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는 콕스(Gray Cox)와 카츠(Jonathan Katz)의 연구(Cox and Katz, 1996)도 있다. 콕스와 카츠는 직접적인 효과는 현직의원의 재원 또는 자원과 같은 가치로 규정하고, 간접적인 효과에는 ‘배제효과’(scare-off effect)와 ‘질적효과’(qualitiy

effect)가 존재한다고 규정했다(Cox and Katz, 1996, 483).¹⁾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도 콕스와 카츠의 연구처럼, 현직의원이나 후보자의 질적 관점에서 현직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여전히 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Carson et al, 2007; Stone et al, 2010).

이상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의회연구에서 촉발된 현직효과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우선적으로 ‘현직효과’ 혹은 ‘현직의 이점’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논의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이론적 논의가 가지는 주요함의에 대해서 고찰하고, 해외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 동향까지도 제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설명한 미국의회연구에서 촉발된 ‘현직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학계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현직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에 대해 분석 및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선거연구에서 의원의 ‘현직효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본격적인 이론적 논의는 대략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박찬욱, 1993; 박찬욱·김형준, 1996; 문용직, 1997; 황아란, 1998, 1999). 특히, 황아란(1998)은 현직후보의 존재 여부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경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현직의 이점이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직효과에 대한 초기의 이론적 논의는 ‘현직후보자가 선거경쟁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현직효과긍정론’(이갑윤·이현우, 2000; 한정택 2007)과 그에 대한 반론으로 현직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며, ‘현직효과’를 긍정하지 않는 논의들(이남영, 1996; 김도중·김형준, 2000)을

1) 도전자가 현직자를 두려워하는 공포를 통한 배제효과, 도전자의 낮은 질에 따른 현직의원의 이점이 증가하는 ‘질적효과’를 의미한다.

위주로 전개되었다.

김도중·김형준(2000)이 제시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직의 이점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취약하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은 그러한 이유로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선대상자 중 현직의원 56.3%만이 당선되었고, 특히 수도권에서 출마한 낙선대상 현직의원 12명 중 1명도 선거에서 재당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에 ‘현직의 이점’ 혹은 ‘현직효과’에 관해서 검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됨과 동시에 ‘현직효과가 존재 한다’는 사실이 실증적인 검증들을 통해 밝혀지면서, 현재는 일반적으로 ‘현직의 이점’ 또는 ‘현직효과’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의원이 현직인지 아닌지 하는’ 비교적 단순한 ‘의원의 현직보유여부’만을 측정변수로 활용했던 초기 분석(황아란, 1998; 이갑윤·이현우, 2000)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방향의 연구들로 연구 관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윤종빈, 2002, 2007, 2010; 한정택, 2007, 2011; 박명호·김민선, 2008, 2009; 김상은·엄기홍 2013; 박윤희 2015; 윤종빈·김윤실·정희옥 2015 황아란 2017).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서는 보통 국회의원의 당선결정요인이나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주요요인으로는 ‘후보자 요인’, ‘정당요인 및 지역구요인’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보자 요인’은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 ‘정당요인’은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지역구 요인’은 선거구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이해된다(김상은·엄기홍, 2013).

특히,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면서 후보자 요인에 관한 논의들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보통 후보자 요인은 ‘후보자 개인의 성격, 경력, 능력 또는 도덕성 등 후보자 개인 특성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박명호·김민선, 2009)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자들로부터 상당한 학술적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 이갑윤·이현우(2000)는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당요인과 후보자 요인을 구분하고 14대부터 16대 총선까지의 집합자료를 분석했는데, 여기서 후보자 요인으로 분류한 ‘현직효과’ 변수가 현직의원의 득표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 비슷한 시기인 14대부터 17대까지의 총선을 분석한 한정택(2007)은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을 제도적요인과 후보자 요인으로 구분하고 가설을 제시했는데, 민주화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거구에 출마한 현직의원들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 후보자 요인의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후보자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해서 제시되었다. 윤종빈(2002, 2006)은 현직 국회의원의 득표율 증감을 분석하면서 후보자 요인의 변수로서 선수, 의정평가, 후원모금액 등을 사용하면서, 정당요인이나 정책요인 뿐만 아니라 후보자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후보자 요인을 도입해 현직후보의 득표율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예로, 박명호·김민선(2009)은 새로운 종속변수인 ‘유효 후보자의 수’를 도입하여 선거구별 정치적 경쟁 정도를 분석하면서, 현직 후보의 선수, 연령, 병역, 경력 등에 따라 정치적 경쟁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또 황아란(2014)의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분석 대상으로, 현직의 이점이 선수가 높아질수록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후보자 요인 중 ‘선수’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검증을 진행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현직효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구분하고 그러한 효과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연구들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박상운·이호준(2015)은 현직효과를 공직자 효과와 자질효과로 구분하고 가설을 제시하면서, 공직자 효과가 현직자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구의 선거 경쟁도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황아란(2017)은 제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현직효과를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구분해서 국회의원 후보의 경쟁력을 분석했고, 그 결과 비현직선거구의 후보와 비교하여 현직후보의 선거경쟁력이 높았으며, 도전후보가 가장 낮은 경쟁력을 보인 점에서 현직의 직접효과와 배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 위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현직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현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요인 또한 검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기존 선행연구들을 평가했을 때, 현직효과가 어떠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설명되는지 또는 현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요인이 어떤 다양한 변수로 대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해당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변수의 추가나 기존 변수의 조정을 통해 계속해서 향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표 1> 재당선 영향 요인에 관한 주요 실증분석

연구자	연구 범위	주요 변수	종속변수
윤종빈 (2002)	16대 총선	초선요인, 득표차, 의정평가, 낙선운동, 정당요인	득표율증감
윤종빈 (2006)	17대 총선	초선, 득표차, 후원모금액, 교육수준, 낙선운동, 입법발의건수, 출석률, 지역정당변수	득표율증감
한정택 (2007)	14대-17대 총선	소속 정당의 크기, 소속 정당의 여야 여부, 당선경합도, 선수, 법률안 발의 건수, 미디어 출현빈도, 당적변경	당선 여부
박명호, 김민선 (2009)	18대 총선	선거구별 출마자수, 17대 총선 득표율, 당적변경여부, 선수, 학력, 선거구 호남여부, 선거구 영남여부, 선거구 수도권 여부 등	유효 후보자수
윤종빈 (2010)	18대 총선	선수, 지역정당, 의정활동(입법발의건수)	득표율 증감
김상은·엄기홍 (2013)	19대 총선	선거경합도, 지역주의, 선수, 출마 후보자수, 지역구 변경 및 당적 변경	득표율증감, 당선 여부

박윤희 (2015)	19대 총선	공천여부, 지역구특별교부금, 제정안발의건수, 선수, 집권당소속여부, 새누리당*영남, 민주당*호남 등	당선 여부
윤종빈·김윤실· 정희옥 (2015)	19대 총선	선수, 선거안정도, 입법활동수준, 경선여부, 영남*새누리, 호남*민주통합당	득표율 증감
박상운·이호준 (2015)	18-19대 총선	정치후원금, 지역구예산, 대표발의법안, 지역구당선경험, 정당지도부, 정당효과 등	당선 여부, 득표율
김한나·박원호 (2016)	20대 총선	경선, 현직, 선수, 초선, 입법활동, 정당요인 등	당선 여부
황아란 (2017)	20대 총선	현직후보, 도전후보, 새누리당, 민주당, 영남, 호남, 학력 등	당선 여부, 득표율
박성호·최선 (2018)	20대 총선	현직의원여부, 19대 총선 출마여부, 지역변수, 후보자수 등	후보요인 득표율

2. 현직의원의 입법활동과 재당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현직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그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도 현직효과를 검증하고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현직의원의 재당선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직의원의 재당선 요인이 어떠한 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변수의 추가나 기존변수의 조정을 통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 요인으로서 ‘현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입법기능(legislation)은 대한민국 헌법 제40조²⁾와 제52조³⁾에서 부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현직 국회의원 활동의 원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직의원이 가지고 있는 입법기능이라는 것은 현직효과를 작동 혹은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원천 중 하나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의 입법기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성에 비해, 국내 선거연구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들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윤종빈(2010)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아직은 유권자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실증적인 접근을 위해 새로운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박윤희(2015)는 입법활동이 재당선에 직접적인

2) 대한민국 헌법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3) 대한민국 헌법 제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타당한 측정변수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통해 일반화된 실증적 논의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박상운·이호준(2015)은 현직자의 입법활동이 현직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어떤 경우에 선거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맞추어, ‘현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라는 후보자 요인에 주목하면서도, 현직의원의 입법활동과 재당선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국내선행연구들을 순차적으로 제시 및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처음으로 현직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측정변수를 사용한 연구에는 윤종빈(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윤종빈(2002)의 연구에서는 16대 총선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의정활동 종합평가 순위의 결과를 ‘의정평가’ 변수로 활용하여 해당 연구의 회귀분석에 사용했다. 사용된 ‘의정평가’ 변수는 크게 정량분석, 정성분석 및 원외 활동의 세 부분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 중 정량분석 부분에 입법발의건수가 포함되어 있다. 분석결과, 해당 독립변수는 유의미한 통계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해당 변수가 ‘의원의 입법발의’ 자체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해 고려하는 유의미한 변수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에 상대적으로 의의를 둘 수 있다.

다음으로는 17대 총선을 분석한 윤종빈(2006)의 연구가 있다. 윤종빈(2006)은 경실련의 16대 의정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현직의원의 의정활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기초적인 지표로 ‘입법발의 건수’를 사용했다. 해당 변수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적극성과

성실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됐지만, 회귀분석 결과 해당변수는 현직의원의 득표지지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유사하게, 14대 총선부터 17대 총선까지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을 분석한 한정택(2007)의 연구에서도 회귀분석결과 ‘법률안 발의 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발의 건수와 재당선율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상관분석결과에서는 법안발의 건수가 많은 현직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재당선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연구에서 ‘법률안 발의 건수’는 현직 국회의원의 개개인의 대표 발의만을 측정한 수치였다.

다음은 18대 총선에서 현직의원의 득표율을 분석한 윤종빈(2010)의 연구이다. 해당 연구에서 현직의원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독립변수로는 ‘의정활동’ 변수가 사용되었다. 해당연구에서 ‘의정활동’ 변수는 법안발의 건수에 의해 측정되는 변수로서, 17대 국회에서 활동한 의원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회귀분석결과 입법발의 건수 변수는 뚜렷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지역·정당 교차변수에 비해 아직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분산분석(ANOVA) 통계검증에서는 연구자 예측한 만큼의 뚜렷한 패턴은 아니지만, 입법발의건수가 높을수록 득표율 변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밝혀낼 수 있었다.

다음은 18대 현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19대 총선의 결과를 분석한 박윤희(2015)의 연구가 있다. 해당연구에서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측정하는 변수로, 두 가지의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제정안 발의건수’이고 다른 하나는 ‘우수입법 선정 여부’이다. 두 변수 모두,

경실련에서 정리한 18대 국회의원 발의법안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측정되었는데, 우선 ‘제정안 발의건수’는 해당 대수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종류 중 ‘제정안’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우수입법 선정 여부’ 변수는, 매해 연말 국회사무처에서 전체 재적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 받았는지의 여부로 측정하고 있다. 해당연구의 분석결과, 의원의 입법활동이 의원의 재당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자가 실증분석을 위해 설계한 모형 1에서는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제정안 발의건수’ 변수가 유의미한 긍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앞서 제시한 박윤희(201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19대 총선을 분석한 윤종빈 등(2015)의 연구이다. 윤종빈 등(2015)은 현직의원의 득표율 증감분석을 위해 ‘입법활동수준’이라는 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연구의 ‘입법활동수준’ 변수는 현직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건수로 측정되었으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측정범위를 한정된 변수이다. 해당연구의 회귀분석결과, 의원의 입법활동 수준은 의원의 득표율에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의원의 선거나 선거안정도가 입법활동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상관분석결과 밝혀낼 수 있었다.

다음은 18대 총선부터 19대 총선을 분석한 박상운, 이호준(2015)의 연구이다. 해당연구는 현직자 우위의 구성요소를 밝혀내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입법활동과 관련된 변수로는 ‘대표발의법안’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연구의 ‘대표발의법안 건수’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변수와 마찬가지로 현직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건수로 측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결과, 현직의원의 입법활동이 의원의 재당선에

있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다만, 선거결과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의 득표율에서 2위 후보의 득표율을 뺀 선거경쟁도 모델에서는 대표발의법안 건수가 일정부분 통계적 유의미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마저도 대표발의법안 건수가 오히려 의원의 선거 경쟁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는 제 20대 총선에서 후보자의 당선결정요인을 분석한 김한나, 박원호(2016)의 연구가 있다. 김한나, 박원호(2016)는 후보자의 선거 경쟁력으로 ‘입법활동력’ 변수를 활용하였다. 해당연구에서 ‘입법활동력’ 변수는 국회의안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국회의원 개인이 대표발의하거나 1인 발의 법안 중 통과된 법안 수를 측정하였다. 다만, 해당연구에서도 이전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현직의원의 입법활동이 의원의 재당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과 당선율의 관계를 분석하는 분산분석결과에서는 입법활동 능력이 좋은 집단일수록 당선되는 후보의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 본 연구에서는 의원의 입법활동이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변수를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제시하였다. 해당 선행연구결과들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입법활동과 연계된 변수로 현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건수를 측정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윤종빈, 2010; 한정택, 2007; 윤종빈 등, 2015; 박상운·이호준, 2015).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변수로는 현직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중 제정안 건수, 혹은 통과된 법안 건수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우수입법선정여부 또한 의원의 입법활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종합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분

선행연구의 회귀분석결과, 현직의원의 입법활동은 의원의 재당선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는 ‘현직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예로, 상관분석결과에서 법안발의 건수가 많은 현직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재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거나(한정택, 2007), 혹은 분산분석결과 발의건수가 높을수록 의원의 득표율 변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거나(윤종빈, 2010), 특정 모형에서는 제정안발의건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박윤희, 2015). 즉,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현직의원의 입법활동에 관련한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있어서 매우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입법활동’과 관련된 변수들이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아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제시된 현직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된 대리변수들이 조정되거나 또는 새로운 변수의 추가를 통해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박상운·이호준, 2015; 박윤희, 2015).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결과 및 선행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현직효과’로서 현직의원의 입법활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고, 관련한 새로운 변수인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 변수의 추가 가능성까지 고려해보고자 한다.

<표 2> 의원 입법활동 관련 변수정리

연구자	연구범위	입법활동 관련 변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윤종빈 (2002)	16대 총선	의정평가	경실련의 15대 의정평가 전체 순위(입법발의건수 포함)
윤종빈 (2006)	17대 총선	입법발의건수	경실련의 16대 의정평가 지표 중 입법발의건수
한정택 (2007)	14-17대 총선	법률안 발의 건수	국회의원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윤종빈 (2010)	18대 총선	의정활동	국회의원의 법률안 대표발의건수
박윤희 (2015)	19대 총선	우수입법선정여부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입법최우수·우수의원 선정 여부
		제정안 발의건수	국회의원의 법률안 대표 발의건수 중 법안의 종류가 제정안인 건수
윤종빈· 김윤실· 정희옥 (2015)	19대 총선	입법활동수준	국회의원의 법률안 대표발의건수

박상운· 이호준 (2015)	18-19대 총선	대표발의법안	국회의원의 법률안 대표발의건수
김한나· 박원호 (2016)	20대 총선	입법 활동능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거나 1인 발의한 법안 중 본회의 통과된 법안의 건수

3. 현직효과로서 의원 입법활동과 ‘지역구 지향적 입법활동’

앞서, 본 연구에서는 의원의 입법활동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입법활동 관련 독립변수들을 제시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변수의 추가나 기존 변수의 조정을 통해서 현직의원의 입법활동과 재당선 관계에 대해 보다 엄밀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 또한 앞선 선행연구들의 문제의식과 마찬가지로,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대표발의건수’, ‘제정안발의건수’, ‘통과된 대표발의건수’, ‘우수입법선정여부’와 같은 변수들이 큰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해당 변수를 통한 현직의원의 입법 활동이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직효과로서

의원의 입법활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선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현직효과 혹은 현직의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였을 때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해 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한 논리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직효과는 단순히 의원의 현직 보유여부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직효과는 현직 국회의원이 어떠한 행태로 자신의 다음 선거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방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즉, 현직효과 발생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현재 현직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위 및 우위를 이용하여, 다음 선거에서 재당선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측면'이 주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직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촉발한 메이휴의 관점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방식이 현직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현직효과 혹은 현직의 이점이라는 것은 '현직의원이 재당선을 위하여 현직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얻게 되는 정치 및 선거활동 방식에서의 우위'와 같은 것이며, 결국에는 현직의원들이 이러한 우위를 활용하여 본인의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의 자신에 대한 개인적 지지'를 형성하고 '재당선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메이휴(1974)와 페노(1978)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메이휴(1974)가 제시한 신인후보에 비해 현직이 가지는 이점인 '홍보', '업적과시', '정책입장표명'과 같은 행위가 바로 현직 국회의원이 가지는 우위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직의원들은 이러한 우위를 활용하여 자신의 지역구민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개인적 지지를 확보하여 다음 선거에서 재당선되는데 주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폐노 또한 현직의원들이 ‘홈스타일’ 유형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본인에 대한 개인적 지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현직효과로서 의원입법활동’이 가지고 있는 보다 합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직의원의 입법활동 자체는 ‘현직의원 본인의 재당선을 위해 현직의원의 지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입법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현직의원이 아니고서는 수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오로지 재선만을 추구하는 존재인⁴⁾ 현직의원은 이러한 입법활동 행위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다음 선거에서 자신의 재당선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종합하자면 ‘현직효과로서 의원입법활동’이라는 것은 ‘현직의원으로서 입법활동 행위를 활용하여 자신의 지역구민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개인적 지지를 확보하고 다음 선거에서 재당선되기 위한 행위’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현직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한 변수들은 위와 같은 고민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주장한 ‘현직효과로서 입법활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현직의원들은 ‘의원 입법활동을 활용하여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로부터 개인적 지지를 형성하고 차후 선거에서 재당선이라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시켜야 하는 것인데,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표법률안발의건수’나 ‘제정안발의건수’등과 같은 지표는 지역구 유권자로부터 의원에 대한 개인적 지지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4) 메이휴는 의원들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목표는 ‘재선’(reelection)이라고 상정하며, 의원들을 “재선을 열망하는 존재(single-minded seekers of reelection)”라고 주장한다

미치지 않을뿐더러, ‘현직효과로서 의원입법활동’의 의도 또한 측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해당변수들은 단순히 의원의 성실성이나 의정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해결함과 동시에 ‘현직효과로서 의원입법활동’의 의미를 보다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역구 지향적 입법활동’의 관점에서 새로운 독립변수인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라는 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신의 지역구민의 개인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업적과시’와 ‘홍보’, ‘정책입장표명’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유권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앞서 상술한 현직효과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논리의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충분히 개연성 있는 행위이다.

그리고 현직의원의 이러한 입법활동 자체가 ‘업적과시’ 혹은 ‘홍보’ 또는 ‘정책입장표명’이라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그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입법활동의 결과물이 지역구에서 좋은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다(박윤희, 2015).

결국, 얼마나 지역구 지향적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현직효과로서 이해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서,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측정하는데 기존의 단순한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와 유사한 고민은 김한나·박원호(2016)와 파커와 굿맨(Parker and Goodman, 2009)의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해당연구에서는 단순히 현직의원이라고만 해서 당선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를 위한 활동을 한 의원인지 혹은 ‘Home Style’ 활동을 한 의원인지의 여부도 재당선에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직효과의 후보자 요인으로서 의원의 입법활동이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타당성 있는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라는 새로운 변수를 제시했다.

해당 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측정방식은 후술할 다음 장에서 다른 후보자 요인과 정당 및 지역구 요인 등의 변수와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제시하고자 한다.



Ⅲ.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1. 데이터 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요인으로서 입법활동이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 20대 국회 기간 동안 현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결과 및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하는 현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파이썬(python)의 뷰티풀소프(BeautifulSoup4)와 셀레니움(Selenium)을 활용하여 크롤링 코드를 제작했고, 그렇게 제작된 크롤러(Crawler)를 통해, ‘국회의안정보시스템’⁵⁾ 사이트에서 현직 국회의원별 20대 국회 입법활동 각 결과 및 법안 세부내용 데이터를 스크래핑(Scraping)했다. 이후 스크래핑된 데이터 중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최종 데이터 파일을 구축하는데 사용했다.

이 외에 다른 자료의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⁶⁾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국회’⁷⁾ 홈페이지, ‘국회의원 정책자료’⁸⁾ 사이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⁹⁾ 홈페이지로,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최종 데이터 파일을 구축했다.

5) <http://likms.assembly.go.kr>

6) <https://www.nec.go.kr>

7) <https://www.assembly.go.kr>

8) <https://ampos.nanet.go.kr:7443>

9) <http://manifesto.or.kr/>

2. 변수의 조작화

<표 3> 변수의 조작화

구분	변수명		조작화	
종속변수	재당선여부		당선여부 (당선 = 1, 낙선 = 0)	
독립변수	입법 활동 변수	제정안 발의건수	현직의원의 대표발의 법률안 중 '새롭게 정한 법안' 건수	
		단순 대표발의 건수	현직의원의 법률안 대표발의건수	
		통과 대표발의 건수	현직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중 '통과된 법안'의 건수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 건수	현직의원의 총선 지역 공약이 의원 법률안 대 표발의로 이어진 경우	해당하는 2가지 경우를 합한 건수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해당 법안이 현직의원 의 의정보고서를 통해 업적과시 및 홍보되고 있는 경우	

통제변수	후보자 요인	선수	의회진입 횟수만큼 자연수	
		초선 여부	의원의 의회진입횟수가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해당 =1, 그 외 =0)	
		정치 후원금(ln)	21대 총선 선거기간 모금한 후원금(후보자 후원회)의 자연로그변환 값	
	정당 및 지역구 요인	미래통합당 *영남	미래통합당이면서 영남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해당 = 1, 그 외 = 0)	
		더불어민주당 *호남	더불어민주당이면서 호남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해당 = 1, 그 외 =0)	
		집권당 소속여부	의원의 소속정당이 집권여당인지 여부 (해당 = 1, 그 외 = 0)	

본 연구는 연구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종속변수를 20대 현직 국회의원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당선여부’로 둔다. 앞선 1장에서 밝혔듯이, 분석범위는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지역구 국회의원 중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동일한 지역구로 출마한 국회의원’으로 한정한다. 즉, 현직 지역구 의원의 비례대표 출마, 현직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구 출마, 자신의 기존 지역구가 아니라 선거구를 바꾸어 출마한 경우는

분석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선거구의 분구나 합구로 인해 기존에 출마했던 선거구의 인접선거구에서 출마한 경우(박명호·김민선, 2008) 혹은 선거구의 지리적 범위는 동일하나 명칭만 수정되고 해당 선거구에 현직의원이 출마한 경우에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출마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하는 분석 범위 내에서 당선된 현직의원의 경우 1, 낙선한 현직의원의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아래와 같다.

1) 독립변수(입법활동 변수)

일반적으로 의원의 법률안 발의는 현직의원의 의정활동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서, 활발한 입법활동이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경향이 있다(윤종빈, 2002, 2006; 한정택, 2007). 그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의 민주화 과정에서 공천심사의 기준 중 하나로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윤희, 2015).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입법활동 변수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윤종빈, 2006; 한정택 2007; 박윤희, 2015; 김하나·박원호, 2016)에서 제시한 ‘제정안 발의건수’, ‘단순 대표발의건수’, ‘통과 대표발의건수’와 본 연구에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제시한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정안 발의건수’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중 개정안, 결의안, 정계안 등이 아닌 법률안으로 ‘새롭게 정한 법률안’ 건수로 측정된다. 다음으로 ‘단순 대표발의건수’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전체 건수로

측정되고, ‘통과 대표발의건수’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중에서 의결결과가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 수정가결, 원안 가결된 법률안 건수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이다.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는 다음 2가지의 유형으로 측정되었다. 첫째,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제시한 지역공약이 의원의 법률안 대표발의로 이어진 경우이다. 해당 유형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제공한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자체평가표(2020년) 자료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원 대표발의법안 내용을 비교 대조하여 해당하는 수치만큼 측정되었다. 둘째, 현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의원의 의정보고서를 통해 지역구를 위한 활동으로 업적과시 및 홍보 되고 있는 경우이다. 해당 유형은 국회의원 정책자료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원활동 부문의 의정보고서 자료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안내용을 비교 대조하여 해당하는 수치만큼 측정하였다. 측정된 2 가지 유형 중 두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측정된 수치를 합산해서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2가지 측정 유형은 모두 적절하게 메이휴가 제시한 ‘현직의 이점’ 혹은 ‘현직효과’로 활용되어, 지역구 주민의 개인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유형 1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지역공약 제시’라는 부분은 ‘정책입장표명’ 활동과 같다. 정책입장표명은 보통 지역유권자를 기쁘게 하는 ‘입장을 취하고 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표명은 의원 자신의 득표를 위해 지역구민에게 특수편익을 제공하는 것과도 연결된다(Mayhew, 1974).

즉, 지역구민을 위한 특수편익을 제공하는 지역공약이 현직의원의 법률안 대표발의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역구민이 원하는 내용의 정책이 수행된다는 것과 함께 개인적 지지 형성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재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대표 발의 법률안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약자체평가표라는 플랫폼을 통해 홍보 및 업적과시 되고 있다는 것 또한 파악할 수 있다. 해당 공약자체평가표는 각 의원실을 통해서 직접 작성되고 있다.

다음, 유형 2에서는 의정보고서를 통한 업적과시 및 홍보를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현직 국회의원은 자신의 활동과 업적을 홍보하고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정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다. 의원 개개인 마다 의정보고서의 형식은 차이가 있으나, 그것을 통해 자신의 활동과 업적들을 주장 및 과시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 의정보고서에 의원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법률안이 지역구민을 위한 활동으로 업적과시 및 홍보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 본인의 노력으로 지역유권자들이 원하는 행위가 수행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 현직의원이 이러한 행위들을 수행하는 이유는 정치 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함인데, 정치 관계자들을 기쁘게 했다면 그들이 다음 선거에서도 그 의원을 신뢰하고, 그의 재선을 도울 것이라는 논리 때문이다(Mayhew, 1974).

다만, 메이휴는 업적에 대한 주장은 그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하고, 유권자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된 주장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원들 또한 적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업적을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해당 연구에서 측정한 한국 의원들의 단순 대표발의건수는 평균 78.18건 인데 비해,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가

평균 3.74 건인 것을 보면, 한국의 현직의원 또한 자신의 입법활동에 대해 과장된 주장을 펼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 요약된 내용은 다음의 <표 4> 와 같다.

<표 4>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 변수 조작화

구분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
유형 1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시된 현직 국회의원의 지역공약이 의원의 법률안 대표발의로 이어진 경우
유형 2	현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의원의 의정보고서를 통해 지역구를 위한 활동으로 업적과시 및 홍보 되고 있는 경우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입법활동 변수에 포함된 각각의 변수(제정안 발의건수/ 단순 대표발의건수/ 통과 대표발의건수/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들은 제 20대 국회 기간 동안 측정된 해당 발의건수만큼의 값으로 코딩되었다.

2) 통제변수(후보자 요인, 정당 및 지역구요인 변수)

(1) 선수

일반적으로 ‘선수’란 ‘의회 내 진입 횟수’를 의미한다. 현직효과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현직의원이 재출마를 한다면, 현직의원이 지속적으로 당선되어 의원 개인의 선수가 높아질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Cain et al. 1984; Fenno, 1978). 뿐만 아니라 선수가 높은

현직의원일수록 입법과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고 전문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와 비례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한정택, 2007). 반면, 선수가 높아질수록 세대교체와 공천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배제 당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수와 재당선간의 관계에서 선형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선수와 재당선 가능성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더욱 강하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한정택, 2007).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직효과에 대한 일반적 논의로서 현직 국회의원의 선수가 재당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수’는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을 기준으로 20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선횟수 또는 의회 내 진입 횟수를 측정한 값이다. 초선의 선수는 1, 재선은 2, 3선은 3의 순으로, 당선횟수와 동일하게 값을 코딩하였다.

(2) 초선 여부

초선의원들은 보통 다선의원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많고 이는 득표율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윤종빈 2002, 윤종빈 2006). 더해서, 윤종빈 등(2015)의 연구에서는 초선 혹은 재선 의원일수록 입법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제이콥슨(1987)은 ‘2년차 부상효과’ 혹은 ‘두 번째 선거 상승효과(Sophomore surge effect)’가 존재한다며, 초선이 재선을 추구할 경우 오히려 다선의원들 보다 당선율이 높고 득표율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서 국내연구에서도 초선여부로 초선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도들이 수행되었는데, 21대 총선이전 가장

최근 선거인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초선여부는 재당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김하나·박원호, 2016). 다만, 본 연구에서는 초선 혹은 재선의원일수록 입법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당변수를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검증해보고자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선 여부’는 의원의 의회 진입횟수가 1일 경우에는 1, 그 외의 경우에는 0으로 더미화 하였다.

(3) 정치후원금(LN)

‘정치후원금’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의원들이 선거기간 동안 모금한 후보자후원회의 후원금액을 측정한 변수이다. 현직의원들은 재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선거자원들을 동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Mayhew, 1974), 특히 후원모금액도 이러한 핵심 선거자원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원모금액이 후보자의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관해서도 여러 기존연구(엄기홍, 2008; 김정도, 2014)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현직의원들이 모금한 후원금액이 재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후원금액의 단위가 다른 변수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 값에 대한 왜곡을 줄이고자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을 코딩하였다.

(4) 지역주의(미래통합당*영남, 더불어민주당*호남)

‘미래통합당*영남’, ‘더불어민주당*호남’은 각각 지역주의에 근거한 한국선거의 투표행태와 정당정치에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고려된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의원의 소속정당이 미래통합당인 경우에는 영남지역에서 당선될 확률이 더욱 높을 것이고 반대로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해당변수는 현직의원이 미래통합당 소속이면서 영남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서 호남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 그 이외의 경우에는 0으로 더미화 하였다.

(5) 집권당 소속 여부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정당요인으로서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보다 거대 정당인 집권여당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의원이 선거에서 다시 재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박명호·김민선, 2008; 박윤희, 2015).

특히,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이라는 상당한 의석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집권여당이라는 정당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해당변수는 현직의원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 1, 그 이외의 경우에는 0으로 더미화 하였다.

3. 연구가설의 설정

연구의 가설은 2장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분석과 앞서 상술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 현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량이 많을수록 재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설 1-1 : 제정안 발의건수가 많은 의원일수록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 단순 대표발의건수가 많은 의원일수록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1-3 : 통과 대표발의건수 많은 의원일수록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1-4 :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가 많은 의원일수록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 현직 국회의원의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 변수가 다른 입법 활동변수보다 의원의 재당선에 유의미한 긍정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설 2-1 :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가 제정안발의건수보다 의원의 재당선에 유의미한 긍정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설 2-2 :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가 단순 대표발의건수보다 의원의 재당선에 유의미한 긍정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설 2-3 :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가 통과 대표발의건수보다 의원의 재당선에 유의미한 긍정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선 가설 1은 현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요인으로서 현직의원의 입법활동량이, 실제로 의원의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설이고, 다음 가설 2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법활동 변수들 중에서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가 가지는 의미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다.

이는 입법활동이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윤종빈, 2006; 한정택, 2007; 박윤희, 2015)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직효과로서의 입법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정되었다.

4. 실증분석모형 구축

앞서 상술한 변수와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총 3가지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3가지 모형은 통제변수인 후보자 요인과 정당 및 지역구요인에 따른 독립변수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모형 1’은 독립변수와 후보자 요인 변수만으로 구성했고 ‘모형 2’는 후보자 요인을 제외하고 독립변수와 정당 및 지역구요인 변수만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변수 전체를 포함하는 종합모형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지막 종합모형인 회귀분석 ‘모형3’은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ext{현직의원의 재당선여부} = & \alpha + \beta_1 \text{제정안 발의건수} \\
& + \beta_2 \text{단순 대표발의건수} \\
& + \beta_3 \text{통과 대표발의건수} \\
& + \beta_4 \text{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 \\
& + \beta_5 \text{선수} \\
& + \beta_6 \text{초선여부} \\
& + \beta_7 \text{정치후원금} \\
& + \beta_8 \text{미래통합당*영남} \\
& + \beta_9 \text{더불어민주당*호남} \\
& + \beta_{10} \text{집권당 소속여부} \\
& + \varepsilon
\end{aligned}$$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입법활동 변수에 따른 재당선여부에 대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통해 당선그룹과 낙선그룹의 집단 간 평균비교를 실시한 이후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전체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재당선 여부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었을 때는 최댓값인 1, 당선되지 못했다면 최솟값인 0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제정안 발의건수의 경우에는 평균 3.5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정안 발의건수의 최댓값은 황주홍 의원이 기록한 21건, 최솟값은 김병기 의원 등이 기록한 0건이다.

다음으로 단순 대표발의건수의 경우에는 평균 78.1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 대표발의건수의 최댓값은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696건이다. 그리고 최솟값은 8건으로, 정양석 의원이 발의한 건수이다.

통과 대표발의건수의 경우에는 평균 23.19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댓값은 214건 최솟값은 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발의건수 중 통과된 법률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214건인 황주홍 의원이고, 1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은 여영국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다.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의 경우에는 평균 3.7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댓값은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18건으로 측정되었고, 최솟값은 정양석 의원 등이 기록한 0건이다.

다음으로 후보자 요인인 선수는 의회 진입 횟수에 따라 최솟값은 1이고 최댓값은 6으로 측정되었으며, 초선 여부는 초선인 경우에는 1, 아닌 경우에는 0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자연로그지수화한 정치후원금은 평균값은 18.8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댓값은 19.55, 최솟값은 17.63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로그지수화 이전에 정치후원금의 최댓값은 전재수 의원이 기록한 3억 1,026만 2,000 원 이였고, 최솟값은 인재근 의원이 기록한 4,545만 5,610 원이었다. 정치후원금은 결과 값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로그로 변환했다.

마지막으로, 정당 및 지역구 요인이다. 미래통합당*영남 및 더불어민주당*호남 변수는, 조건에 해당되는 의원인 경우에는 최댓값인 1,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솟값인 0으로 측정되었다. 다음, 집권당 소속여부 변수는 의원의 소속정당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되지 않는다면 0으로 측정되었다.

<표 5> 기술 통계량

구분	관측 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제당선 여부	179	0	1	0.64	0.482
제정안 발의 건수	179	0	21	3.54	3.359
단순대표발의 건수	179	8	696	78.18	66.901
통과대표발의 건수	179	0	214	23.19	23.814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 건수	179	0	18	3.74	3.259
선수	179	1	6	2.01	1.147
초선 여부	179	0	1	0.43	0.496

정치후원금(LN)	169	17.63	19.55	18.86	0.52
정치후원금	169	45455610	310262000	173561480 .98	75425470 .09
미래통합당*영남	179	0	1	0.12	0.323
더불어민주당 *호남	179	0	1	0.03	0.180
집권당 소속여부	179	0	1	0.54	0.500

2. 기초 데이터 분석결과

제 20대 국회는 임기 개시일인 2016년 5월 30일에는 총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임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 중 5개의 선거구¹⁰⁾에서 국회의원이 퇴직 혹은 사직하고 최종적으로는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대 국회 임기종료 당시에는 24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비례대표를 제외한 24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60명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컷오프를 당했고, 총 9명¹¹⁾의 지역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로 출마하였다.

이상, 앞서 언급한 선거구 및 인원을 제외한 총 179명의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일반적으로, 현직의원의 재당선이라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자신의 현재 지역

10) 경기도 용인시 갑, 강원도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경북 경산시,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이상 5개 선거구.

11) 김두관, 김재원, 안상수, 이언주, 이정현, 이종구, 이혜훈, 정우택 주호영 이상 9명.

선거구로 재출마하여 다시 당선되는 것을 의미한다(박명호·김민선, 2008).

아래의 <표 6>은 총 현직 지역구 의원 수인 248명의 출마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직의원의 재출마율은 72.2%였고 불출마 혹은 타 선거구로 이전 하여 출마한 인원은 27.8%로 나타났다.

<표 6> 21대 총선 현직 지역구의원의 재출마여부

구분	관측 수	비율(%)
재출마	179	72.2
불출마 및 선거구 이전	69	27.8
합계	248	100.0

다음 아래의 <표 7>은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출마 인원 179명 중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비율과 낙선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당선된 인원은 총 179명중 114명으로 63.7%에 해당하고 있으며, 낙선한 비율은 179명 중 65명으로 36.3%에 해당하고 있다.

출마한 총 179명의 인원 중 정당공천을 받은 현직의원은 총 157명이었는데, 157명 중 당선된 인원은 총 111명으로 약 70.7%에 달한다.

<표 7> 21대 총선 현직 지역구의원의 당락

구분	관측 수	비율(%)
당선	114	63.7
낙선	65	36.3
합계	179	100.0

결론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재출마율은 72.2%였고, 재당선율은 63.7%였다. 다만,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현직의원을 제외하면, 현직의원의 재당선율은 약 70.7%였다.

위의 기초 데이터 분석결과, 재출마한 인원 중 63.7%의 과반수 이상의 현직의원이 재당선에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현직효과가 재당선에 어느 정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해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한국 선거에서 현직효과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비교적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3. T-test 분석결과

21대 총선에 재출마한 현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독립변수가 당선된 집단과 낙선한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나타내는지 파악하기 위해 총 4개의 입법활동 독립변수에 대해 T-test를 진행했다.

다음 <표 8>은 현직의원의 입법활동과 당락에 관한 T-test 분석 결과이다. 우선, 제정안 발의건수는 당선된 집단에서는 평균 3.72건, 낙선한 집단에서는 평균 3.23건으로 나타났다. 단순수치 상으로는 집단 간 약 0.5건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분석결과 $t=0.935$, $p=0.351$ 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다음으로 단순 대표발의건수이다. 단순 대표발의건수는 당선된 집단에서는 평균 81.81건, 낙선한 집단에서는 평균 71.83건으로 나타났다. 단순수치 상으로는 집단 간 약 10건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분석결과 $t=0.959$, $p=0.339$ 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다음은 통과 대표발의건수이다. 통과 대표발의건수는 당선된 집단에서는 평균 25.33건, 낙선한 집단에서는 평균 19.43건으로 나타났다. 단순수치 상으로는 약 6건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분석결과 $t=1.602$, $p=0.111$ 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이다.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는 당선된 집단에서는 평균 4.18건, 낙선한 집단에서는 평균 2.97건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t=2.432$, $p=0.016$ 으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하자면, T-test 결과, 총 4개의 입법활동 관련 독립변수 중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만이 비교적 유의미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T-test 결과

구분	집단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P)$
제정안 발의건수	당선집단	114	3.72	3.465	0.325	0.935 (0.351)
	낙선집단	65	3.23	3.166	0.393	
단순대표발의 건수	당선집단	114	81.81	51.681	4.840	0.959 (0.339)
	낙선집단	65	71.83	87.568	10.861	
통과대표발의 건수	당선집단	114	25.33	20.914	1.959	1.602 (0.111)
	낙선집단	65	19.43	27.972	3.469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	당선집단	114	4.18	3.620	0.339	2.432 (0.016)**
	낙선집단	65	2.97	2.332	0.289	

*p<0.1, **p<0.05, ***p<0.01

4.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다음 <표 9>는 현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와 같이 모형 1에서는 독립변수와 후보자 요인 변수(선수, 초선여부, 정치후원금)만, 모형 2에서는 독립변수와 정당 및 지역구 요인 변수(미래통합당*영남, 더불어민주당*호남, 집권당 소속여부)만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모형의 설명력은 모형 1에서는 Nagelkerke $R^2=0.181$, Cox-Snell $R^2=0.129$ 로 나타나고 있고, 모형 2에서는 Nagelkerke $R^2=0.498$, Cox-Snell $R^2=0.364$ 마지막 모형 3에서는 Nagelkerke $R^2=0.588$, Cox-Snell $R^2=0.422$ 임을 알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변수를 종합하고 있는 종합모형인 모형 3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모형 3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모형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반면에, 독립변수와 후보자 요인 변수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 1의 설명력은 다른 두 모형에 비해서 비교적 약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선거에서 정당 및 지역구 요인을 제외한 모형은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Hosmer-Lemeshow Test 결과, 모든 모형의 유의수준이 0.05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하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1-3이 비교적 적절하게 설계된 모형임을 검증해주고 있다.

<표 9>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제정안 발의건수	0.045 (0.071)	0.157* (0.088)	0.141 (0.115)
단순 대표발의건수	-0.008 (0.007)	-0.021** (0.008)	-0.015 (0.010)
통과 대표발의건수	0.023 (0.019)	0.046** (0.023)	0.028 (0.027)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	0.089 (0.065)	0.253*** (0.082)	0.194** (0.093)
선수	-0.338 (0.264)	-	-0.439 (0.357)
초선 여부	-0.103 (0.596)	-	-0.748 (0.815)
정치후원금(LN)	1.314*** (0.350)	-	0.611 (0.454)
미래통합당*영남	-	3.719*** (0.860)	3.935*** (1.132)

더불어민주당*호남	-	-1.677 (1.095)	17.545 (19522.042)
집권당 소속여부	-	3.260*** (0.493)	3.535*** (0.553)
상수	-23.687*** (6.629)	-2.191*** (0.532)	-12.102 (8.562)
Nagelkerke R ²	0.181	0.498	0.588
Cox-Snell R ²	0.129	0.364	0.422
Hosmer-Lemeshow Test	0.734	0.793	0.385

*p<0.1, **p<0.05, ***p<0.01

본 연구는 각각의 모형 1-3에 대한 기초적인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후 통제변수로 설정한 후보자 요인과 정당 및 지역구 요인이 실증분석모형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그러한 원인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형1-3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모형 1에서는 정치후원금(LN)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후원금(LN)변수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강한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모형 2이다. 모형 2에서는 정당 및 지역구 요인 변수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호남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제정안발의건수는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단순 대표발의건수와 통과 대표발의건수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정안발의건수와 통과 대표발의건수,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는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단순 대표발의건수는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영남 변수와 집권당소속여부 변수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강력한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전체변수 종합모형인 모형 3이다. 모형 3에서는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와 미래통합당*영남, 집권당 소속여부 변수만이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미래통합당*영남, 집권당소속여부 변수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강력한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언급한 3가지의 변수를 제외하고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먼저 후보자 요인 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수는 모형 1과 모형 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한정택(2007)과 엄기홍·김상은(2013)의 연구에서는 ‘선수’가 의원의 재당선에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황아란(2014) 또한 선수와 재당선이 일관된 방향성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초선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초선 여부 또한 모형 1과 모형 3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윤종빈 등(2015)의 연구에서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행태가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후원금(LN) 변수는 모형 1에서는 유의미한 긍정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모형 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형 3에서 포함된 정당 및 지역구 요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해당하는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정당 및 지역구요인 변수이다. 우선, 미래통합당*영남변수와 더불어민주당*호남 변수 중 미래통합당*영남변수는 모형 2와 모형 3에서 모두 유의수준 1%수준으로 유의미하고 강력한 긍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한국 선거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병폐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 결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래통합당*영남변수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의원의 재당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줄 알았던 더불어민주당*호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민생당 현직의원이 다수였던 호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출마한 현직 국회의원¹²⁾ 숫자 자체가 너무 적었던 문제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집권당 소속여부는 모형 2와 모형 3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가져간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설 1 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량이 많을수록 재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는데, 우선 모형 1에서는 현직의원의 입법활동 변수 자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현직의원의 입법활동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12) 서삼석, 손금주, 송갑석, 안호영, 이개호, 이춘석 이상 호남에 재출마한 6명의 인원 중 손금주, 이춘석을 제외한 4명이 당선되었다.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선 모형 2에서는 제정안발의건수, 단순 대표발의건수, 통과 대표발의건수,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 모두가 의원의 재당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제정안 발의건수는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의원의 재당선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단순 대표발의건수와 통과 대표발의건수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통과 대표발의건수는 의원의 재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단순 대표발의건수는 오히려 의원의 재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는 입법활동 변수 중 가장 큰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당 변수는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의원의 재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입법활동 변수 중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만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의원의 재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모형 1에서는 입법활동 변수가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고, 모형 2에서는 모든 입법활동 변수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기는 하나 단순 대표발의건수는 오히려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모형 3에서는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만이 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자면 가설 1은 제한적으로 채택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1-1과 1-3은 모형 2에서만 채택되고, 가설 1-4는 모형 1을 제외한 모형 2와 모형 3에서 채택된다. 반면, 가설 1-2는 모든 모형에서 기각되고 있다.

다음 가설 2에 따르면 현직의원의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가 다른 입법활동 변수에 비해 재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기대되었는데, 우선 모형 1에서는 독립변수인 ‘입법활동’ 변수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다. 다음 모형 2에서는 모든 입법활동 변수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지역구 지향적 입법발의건수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의원의 재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 2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모형 3에서도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만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의원의 재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 2가 채택되었다.

결론적으로, 모형 1에서는 변수 전체가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지만 모형 2와 3에서는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가 다른 입법활동 변수에 비해 더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면서 가설 2 또한 가설 1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2-1, 2-2, 2-3은 모형 1을 제외한 모형 2, 3에서는 모두 채택되고 있다.

가설 1과 가설 2 모두가 제한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연구의 종합모형인 모형 3에서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가 많을수록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가 다른 입법활동 독립변수들에 비해 의원의 재당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현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요인으로서 입법활동이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는 현직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된 입법활동 변수, 정당 및 지역구 요인, 후보자 요인을 고려하는 모형 1-3을 통해 입법활동이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다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회귀분석결과 현직 국회의원의 후보자 요인으로서 입법활동 변수가 의원의 재당선에 제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제정안 발의건수’, ‘통과 대표발의건수’,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가 의원의 재당선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특히, 종합모형인 모형 3에서는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가 재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입법활동 변수 중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가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제정안 발의건수’, ‘단순 대표발의건수’, ‘통과 대표발의건수’보다 의원의 재당선에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2와 모형 3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회귀분석 이전에 시행한 입법활동 변수에 대한 T-test 결과에서도 오직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건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더해서, 다른 후보자 요인과 정당 및 지역구 요인이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당 및 지역구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미래통합당*영남 변수와 집권당 소속여부 변수는 포함된 모든 모형에서 재당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선, 미래통합당*영남 변수가 전체 모형 1-3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아직도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집권당 소속여부가 강력한 긍정의 영향을 미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을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이라고 파악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호남 변수는 미래통합당*영남 변수와 동일한 지역주의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앞선 4장에서 언급했듯이, 호남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후보자 요인인 선수와 초선여부는 포함된 모든 모형에서 재당선에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치후원금변수 또한 독립변수와 후보자 요인만을 포함한 모형 1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 요인 변수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이론적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현직의원들의 대표발의법안 데이터들을 활용 및 분석하여 이와 의원의 재당선 관계를 분석해보았으나, 결과적으로 ‘가설 1’과 ‘가설 2’ 모두 제한적으로 인용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설의 제한적 인용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함의를 가진다.

첫째,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 변수가 전체변수의 종합모형인 모형 3을 통해서 유의미한 긍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가정한 ‘현직효과로서의 입법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실증분석을 통

해 일정부분 증명되는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직의원들이 임기 내에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을 위한 입법활동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 의원 본인이 재당선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둘째, 입법활동과 의원의 재당선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보다 적실성 있는 대리변수를 제시했다.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 변수가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입법활동 관련 변수보다 더 큰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모형 2와 종합모형인 모형 3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입법활동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직효과로서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분석을 제시해 주었다.

셋째, 후보자 요인으로서 입법활동의 중요성을 제고했다. 독립변수인 ‘입법활동’변수가 모형 2와 모형 3에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증명하지 못한 의원 입법활동의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있어서 의원 입법활동을 하나의 주요한 후보자 요인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입법활동 관련 변수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 변수를 통해, 의원 입법활동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실증분석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 파편화되어 있던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후보자 요인으로서 입법활동’과 ‘현직효과로서 입법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부분적으로 증명했다. 특히, ‘지역구 지향적 대표발의’라는 변수를 통해 재당선에 있어 의원 입법활동의 영향력을 분석한 것은 본 연구가 가지는 가장 중

요한 함의일 것이다.

현직의원의 재당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입법활동에 대한 연구 관심이 다른 현직효과와 관련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현직의원의 입법활동은 ‘재선을 열망하는 존재’로서 그들의 현직의 이점 혹은 현직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더욱 엄밀한 데이터 구축과 타당성이 높은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한 단계 더 극복하는 체계화된 이론적 논의가 구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 김도중, 김형준 (2000),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4(2): 105-127.
- 김상은, 엄기홍 (2013), “선거경합도가 득표율과 재선에 미치는 영향: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현대정치연구』 6(2), 69-93.
- 김한나, 박원호 (2016), “제 20대 총선의 후보자 당선결정요인.” 『21세기 정치학회보』 26(2): 51-76
- 김정도 (2014), “1인 2표제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구 선거 득표율과 정당투표 득표율의 차이 분석.” 『의정논총』 9(1): 143-170.
- 문용직 (1997),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현직 국회의원 효과.” 『의정연구』 2(1): 37-55.
- 박상운, 이호준 (2015), “현직자 우위의 구성요소: 한국의 제 18,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31(1): 393-410.
- 박성호, 최선 (2018), “한국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요인: 재출마 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8(1): 87-115.
- 박명호, 김민선 (2008), “한국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자의 재선 추이에 관한 분석: 16-18대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1): 161-175.
- 박명호, 김민선 (2009), “후보자 요인, 현직효과 그리고 정치적 경쟁.” 『정치정보연구』 12(1): 165-178.
- 박윤희 (2015), “국회의원의 현직효과가 재당선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18대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10(1): 37-64.
- 박찬욱 (1993),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9(2): 1-31.

- 박찬욱, 김형준 (1996),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2(2)
- 백창재 (2017), “미국 의회 연구: 메이휴와 페노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6(3): 277-302.
- 엄기홍 (2008), “한국 후원회의 정치자금 기부금 결정요인: 2004-2006년 기부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2(1): 49-70.
- 윤종빈 (2002),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의원의 득표율증감 분석: 지역구활동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4): 129-146.
- 윤종빈 (2006), “한국에서의 현직의원 지지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3): 145-164.
- 윤종빈 (2010), “18대 총선의 현직의원 득표율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26(4): 27-55.
- 윤종빈, 김윤실, 정희옥(2015), “현직의원의 득표율 증감 분석: 제 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23-47.
- 이갑윤, 이현우 (2000),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2): 149-170.
- 이남영 (1996), “한국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 1985년, 1988년 양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비교 분석.” 김광웅, 이갑윤 편. 『정당, 선거, 여론』 145-163. 서울: 한울.
- 전진영 (2013), “국회의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국 사례의 비교.” 『이슈와논점』 제 671호. 국회입법조사처.
- 한정택 (2007), “한국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 분석: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3): 73-39.
- 한정택 (2011), “현직자의 당적 변경과 재당선: 민주화 이후 총선결과를 중

- 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2): 99-119.
- 황아란 (1998), “국회의원선거의 당선경쟁과 선거구요인: 제 15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 경재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2(3): 163-186.
- 황아란 (1999), “6·4 기초단체장선거와 현직효과.” 조중빈 외 편. 『한국의 선거 3: 199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347-389. 서울: 푸른길.
- 황아란 (2014), “현직후보의 선거 경쟁력 분석: 2010년 기초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0(4): 63-93.
- 황아란 (2017), “국회의원선거와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제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4): 123-146.
- Ansolabehere, Stephen and James M. Snyder, Jr. 2004. “Using Term Limits to Estimate Incumbency Advantages When Officeholders Retire Strategically.”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9(4): 487-515
- Ansolabehere, Stephen., Erick C. Snowberg and James M. Snyder. 2011. “Television and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31(4): 469-490.
- Berry, William D., Michael B. Berkman and Stuart Schneiderman. 2000. “Legislative Professionalism and Incumbent Reelection: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al Boundar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4): 859-874.
- Cain, Bruce E., Hohn A. Ferejohn and morris P. Fiorina. 1987. *The Personal Vote: Constituency Service and Electoral Independ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son, Jamie L., Erik J. Engstrom, and Jason M. Roberts. 2007.

- “Candidate Quality ,the Personal Vote, and the Incumbency Advantage in Congr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2): 289–301.
- Cox, Gary W. and Jonathan N. Katz. 1996. “Why Did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House Elections Grow?”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s*. 40(2): 478–497.
- Druckman, James N., Martin J. Kliffer, Michael Parkin. “Campaign Rhetoric and the Incumbency Advantage.” *American Politics Research*. 48(1): 22–43.
- Erikson, Robert S. 1972. “The Advantage of Incumbency in Congressional Elections.” *Polity*. 3: 395–405.
- Fenno, Richard F. 1973. *Congress in Committees*. Boston. Little Brown.
- Fenno, Richard F. 1978. *Home style: House Members and Their Districts*. Boston and Toronto: Little, Brown.
- Fiorina, Morris P. 1977.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The Bureaucracy Did I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 177–181.
- Hogan, Robert E. 2008. “Policy Responsiveness and Incumbent Reelection in State Legislatur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2(4): 858–873.
- Jacobson, Gary C. 1987. “The Marginals Never Vanished: Incumbency and Competition in Elections to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52–82.”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 126–141.
- Jacobson, Gary C. 2015. “It’s Nothing Personal: The Decline of the

- Incumbency Advantage in US House Elec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77(3): 861–873.
- King, Gary. 1991. “Constituency Service and Incumbency Advantag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1): 119–128.
- Mayhew, David. 1974.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Mayhew, David. 2004.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2nd ed.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Norton Philip and David M. Wood. 1993. *Back From Westminster: British Members of Parliament and Their Constituents*. Lexington, Kentucky: The University of Press of Kentucky
- Parker, David C.W. and Craig Goodman. 2009. “Making a Good Impression: Resource Allocation, Home Styles, and Washington Work.”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34(4): 493–524.
- Stone, Walter J. Sarah A. Fulton, Cherie D. Maestas and L. Sandy Maisel. 2010. “Incumbency Reconsidered: Prospects, Strategic Retirement, and Incumbent Quality in U. S. House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72(1): 178–190.
- Stokemer , Daneil and Praino, Rodrigo. 2012. “The Incumbency Advantage in the US Congress: A Roller Coaster Relationship.” *Politics*. 32(3): 220–230.

The effect of Home Style legislative activities on the re-election of incumbent
members
: Focusing on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PARK JI W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a, JaeKwon, PhD

Abstract

Compare to the importance of legislative activities of incumbent member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activities and re-election of members is insufficient to other related studi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do legislative activities, which can be seen as one of the candidate factors affecting the incumbency advantage, affect the re-election of incumbent members?' Along with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legislative activity of incumbent members, interest in how legislative activities of incumbent members affect their re-election continues to grow.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legislative activity variables have a limited positive impact on the re-election of members. In Model 2, 'the number of enactment proposals', 'the number of passed representative proposals', and 'the number of Home style representative proposals' positively affected the re-election of incumbent members. In addition, among the variables of legislative activity, 'the number of Home style representative proposals' presented in this study was

statistically more significant than the 'number of enactment proposals', 'the number of simple representative proposals', and 'the number of passed representative proposals'. It was found in Model 2 and Model 3 presented in this study.

In addition, by confirming that the 'Home Style representative proposals' variable has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through the comprehensive model, Model 3,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legislative activities as incumbency advantage' assumed in this study have been demonstrated in part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other word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cumbent members can increase their chances of re-election in the next election by legislative activities for their constituency.

In sum, this study was limited, but it was able to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legislative activities as candidate factors' and 'legislative activities as incumbency advantage'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legislative activities of members in re-election through the variable 'Home Style representative proposals' may be important to this study.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uctured theoretical discussion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rough more rigorous data construction and various variables with high validity.

Keyword : Incumbency Advantage, Legislative Activities, Re-election, Home style Legislation , Voting behavior